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법9조1항8호)

• 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5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국	과		
군사시설 기획관실	시설기획 환경과	부대이전사업 정책결정	부대이전에 대한 업무로 공개시 (부대의 이전 위치, 규모, 시기 등)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3급비밀)
		정부개발사업에 따른 군사 시설 관련 협의	작성성 검토결과(비밀 또는 평문)에 따른 부대의 이전 위치, 규모, 시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세부개발 계획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건설관리과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고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사업관련 정부부처 업무협조 단계에서 공개하는 경우 특정법인·단체, 사업지역 주민(지자체 포함)에게 피해로 인한 공공복리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취지에 맞지 않음
	군사시설 재배치과	국특회계/군사시설이전	군시설 이전사업은 부대이전 사업으로써 부대위치 및 규모 등 사업계획이 사전 노출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이전반대 초래 및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은 군구조개편과 맞물린 군시설 이전 연계사업으로 정보공개시 군사비밀 유출 등으로 부동산투기 조장 및 국가사회 혼란 우려	